
Policy and Law Report _Vol.9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16 ~ 7.25) -

July 2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④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⑥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 등이 있음	2021-07-22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연차, 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사업 집중 신설·보강 -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과 제도 개선 추진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을 '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 대폭 확대 - 장기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 촉진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 * '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를 운영하여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 실시 * '25년까지 35개 신설	2021-07-22

부처	내용	일시
	② 기업의 사업재편·전환+노동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종합지원 -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신설)할 계획 -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신설)하여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Tool까지 종합 지원 -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25년까지 400만명) -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마련 ③ 컨설팅 전담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등이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신설)하여 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 -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 마련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간접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를 펀드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및 집합투자 자기자본의 1%(최저 4억원, 최고 10억원) 이상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③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경우 계열회사 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의 운용성과가 대칭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허용되는 성과보수 유형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및 집합투자 자기자본의 1%(최저 4억원, 최고 10억원) 이상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설정 2년 이후부터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수시 공시하도록 완화 ⑥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등이 있음	2021-07-16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7.27.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20.11월 발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과 정관 등 변경시 신고면제 사항을 정비 ②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③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 신설 등이 있음	2021-07-20

부처	내용	일시
방위 사업청	• 기업과 상생하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 방위사업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방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면제 대상 확대 - 양산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타 계약 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방산 경험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 참여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출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업체가 작성한 자료의 이상 및 누락 유무를 사전에 검토·확인해 주는 절차 마련 ② 국내 조달원 등록 품목코드 일제 정비 - 업체가 방산분야 참여를 위해 조달원 등록 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코드는 삭제하고, 현 산업분류에 맞지 않던 산업분류코드를 일제 정비하여 기존 90종의 코드를 23종으로 간소화 ③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요구서를 기존 입찰 공고 시 공개하던 것을 조달판단 전에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④ 한도액계약 활성화를 위해 참여범위 확대 등이 있음 - 국내 한도액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부품 단종 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를 국내 체계업체까지 확대 - 국외 한도액계약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그리고 이외 방산업체의 부담 완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u>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u> ① 지체상금 부과 방식 개선 -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하여도 체계업체는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2021-07-22

부처	내용	일시
	하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 ②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 삭제 -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이후 입찰 참여 시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불이익 조치 개선 -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 ③ 불합리한 상한가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해 주었으나, 설계변경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07-21
보건 복지부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서 부실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1-07-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동 계획안은 그간 개별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별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을 묶어서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된 지원사업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임 이에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021-07-20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1-07-20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 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제2조 및 제3조) ②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 (제4조 및 제5조) ③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 (제6조 및 제7조) ④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 (제8조부터 10조까지) ⑤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제11조)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23(금)~9/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로 제출	2021-07-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그 제조·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별표6 제11호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 의견제시기간 : 7/21(수)~8/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1-07-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 이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함 ②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③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④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⑥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으로 정함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7/21(수)~8/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로 제출	2021-07-2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유류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럽연합,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시운전 선박의 유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세 혜택이 필요함 이에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5조제2항 신설)	2021-07-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40%, 대·중견기업 최대 30%)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2%, 중견 5%, 대기업 3%)를 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2021-07-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동의를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를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를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 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를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를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9조 및 제124조)	2021-07-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8조 제1항)	2021-07-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의원 등 31인)」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현 단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도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산업 전반의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인공지능산업기반 경제전환 및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인공지능윤리의 사회적 신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2021-07-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⑦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⑧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등이 인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과 번영에 공헌하는 등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31조) ⑪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2조)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작성·생산 등을 한 자의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함 (안 제35조 및 제36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u>」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음이 밝혀짐 아울러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3)	2021-07-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환경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 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각종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라, 200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국제표기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기법에 의거해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가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어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이바 지하고자 함 (안 제14조)	2021- 07-2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7/3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발간	
국회도서관	7/27(화)	「현안, 외국에선?」 제16호 발간 -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7호 발간 -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	
예산정책처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 발간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입법조사처	7/28(수) 07:30	「제7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7/29(목) 15: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 관련	
미래연구원	7/29(목)	「Futures Brief」 제1호 발간 - 이머징 이슈와 세계 동향	

[별첨1] 제389회국회(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방위	7/26(월) 10:00	전체회의	현안보고 등
문체위	7/27(화) 14:00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8(수) 10:00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강은미, 이수진, 장철민 의원실	ZOOM
7/30(금) 14:0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송기헌, 최기상 의원실	입법조사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2(목) 14:00	<u>(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u>	이재정, 기동민, 이규민 의원실, 한베평화재단	이재정TV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